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5. 1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5.8. 한일용 의원 외 8명

나. 회부일자 : 2019.5.8.

다. 상정일자 :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5.1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신종갑 의원】

가. 개정이유

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자연 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의의 정의(안 제2조)
-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 지원 (안 제3조)
-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(안 제4조)
- 보험가입(안 제5조)
-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제정조례안은 한일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,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제정안은 「자연환경보전법」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바 “자연보호조직”이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따라 마포구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함.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절차, 관리, 정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.
- 안 제5조에서는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함.
- 검토의견으로는
최근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대기오염 등으로 더욱 심각해진 스모그나 미세먼지 등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과 주요 포털

사이트 인기검색어 상위순위에 맑은 하늘, 깨끗한 공기 등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한편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.

- 이번 제정조례안은 자연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교육,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한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